

비과세종합저축 특약

제1조(약관의 적용)

비과세종합저축(이하 '저축'이라 한다)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
예금거래기본약관,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, 은행이 취급하는 각종 예금, 신탁, 채권 등 (이하 '예금 등'이라 한다)의 약관(특약 포함)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2조(가입대상자)

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1.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2.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
3.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
4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
5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6. 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한 5.18민주화
운동부상자

제3조(대상 예금 등)

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예금등과 각 취급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예금 등은 제외합니다.

1.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 : CD,표지어음,무기명정기예금 등
2. 어음,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 : 당좌예금, 가계당좌예금 등
3.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중인 비과세 예금 등
4. 외화예금

제4조(예치한도)

- ① 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금 등 계좌의 예치한도는 원금을 합하여 5천만원(다만,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② 이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1인당 한도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종 이자원가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한도에 포함합니다.
-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이 저축의 한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.

제5조(예치한도 산정)

- ① 거치식예금(목돈굴리기예금) 등은 거래처가 가입한 예치 원금으로 합니다.
- ② 정액(정기)적립식예금 등은 월 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, 자유적립식 및 추가 납입이 가능한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.

제6조(예치한도 변경)

이 저축의 한도를 늘리거나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제7조(비과세 관리)

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.

제8조(표시방법)

이 저축가입자는 신규 가입 시 「비과세종합저축」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은행은통장의 표지, 내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「비과세종합저축」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제9조(적용 이자율)

이 저축으로 가입한 각 예금 등의 적용 이자율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10조(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)

거래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은행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, 이 때 은행은 당초 약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신탁, 채권 등은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11조(저축의 전환 여부)

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상호 전환할 수 없습니다.

제12조(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)

제11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하여 가입한 때에는 거래처가 이 저축으로 선택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 계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.

제13조(명의변경 등)

명의변경 및 양·수도는 허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.

제14조(예치한도 초과 입금 제한에 따른 책임)

예치한도 초과로 입금(무통장 입금 및 다른 은행으로 송금 포함)이 되지 않아 수표의 지

금결제 불가,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,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15조(비과세 특례 제한)

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(재예치 포함)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제16조(과세특례 부적격 판정 통보 및 의견제시)

- ① 가입 시점에 가입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한 경우 가입을 제한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국세청의 최초 통지 시점에 확인하며, 이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립니다.
- ③ 이 저축가입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가입자의 사망, 해외장기출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가입자의 이의가 수용되어 과세특례 자격이 적격으로 다시 판정되고 국세청이 이를 통보해 온 경우 통보 내용에 따라 조치합니다.

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부 칙

1. 이 특약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.
2.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·보유·취득·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.
3.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.
4. 이 개정 특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